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86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 송재봉・임호선・장철민

박정현 · 복기왕 · 강준현

이강일 • 박용갑 • 이정문

이재관 · 조승래 · 엄태영

박범계 · 장종태 · 황정아

황명선 • 이연희 • 박덕흠

문진석 • 이광희 • 성일종

박수현 • 강훈식 • 어기구

백승아 · 이종배 · 임광현

허성무 · 손명수 의위

(2991)

제안이유

청주국제공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 정」에 따라 군비행장 활주로와 여객터미널·계류장·주차장 등 민간 항공기 전용시설을 이용하여 취항하고 있으나, 활주로는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이 없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비행장 활주로의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을 배정받아 민간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충청권·서울 동남권·경기 남부권의 첨단산업 물류와 약 1,400만명 배후이용객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이 급증 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군 겸용활주로 1본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노선 확대가 불가하여 청주국제공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은 반드시 확충해야 하며무엇보다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로 중·장거리노선 운항이 가능해지고 국제노선이 확대되면 현재 전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이용객의 이동비용과 약 99%의 항공물류 이동비용이 매우 절감되어 국민 생활과 물류·산업 부분에서 느끼는 경제적 체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수도권·지방광역권의상생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항공·교통 등 핵심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의 초광역권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맞아 충청권역·경기남부권역등 중부권을 아우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항공교통 확보는 무엇보다중요함.

이에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공항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청주국 제공항을 확장하여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

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 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군비행장 활주로와 분리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여 여 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하여 수도권 집중완화 및 중 부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 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을 두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등과 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사.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부담금등의 감면,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그 밖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 3조까지).

법률 제 호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간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로서 「항공사업법」 제7조, 제1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기타 자가용 항공기를 말한다.
- 2.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이하 "민간전용 활주로"라 한다)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른 군비행장(국방부 관할하의 비행장을 말한다)과 분리되어 민간항공기가 전용하는 활주로를 말한다.
- 3.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이란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과 분리되어 이용하는 민간전용 활주로, 계류장, 여객청사, 화물청사, 주차장 등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이 구비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리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한 민간의 단체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민간전용 활주로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나.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 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 다.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이란 민간전용 활주로가 건설될 부지가 소재한 지역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을 말한다.
- 6.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와 민간전용 활주로가 건설될 부지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전용 활주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 1. 군비행장 활주로와 분리된 민간전용 활주로 운영과 중·장거리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운영
 -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민간전용 활 주로의 신속한 건설
-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중부권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르며,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사업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공항개발로 본다.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군기본계획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제2장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및 지원 등

-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 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8조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 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 립실시계획의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 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고시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

가 등에 관한 협의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 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 3.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 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8조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 택지의 조성 등 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북도지사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을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①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전용활주

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 교통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

- 제15조(재정 지원) 국가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16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제18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민간전용활주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민 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 제21조(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 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제22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

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이 경우 전환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 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 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27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 3.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 4. 사정 변경으로 민간활주로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2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 제30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1 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 제31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 여 시설을 사용한 자
-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한 자
-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 4. 제2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 제32조(업무방해 죄)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시설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